

1. 제조(수입)업허가 · 변경

업 체 명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진우약품(주)	업 체 명	부연화학(주)	진우약품(주)
	대 표 자	조 훈 영	함 영 만
(주)샘플축산	허가취소	동물용의약품 제조업허가 자진취하	

2. 동물약품제조용 유당 업체별 배정

동물용의약품 제조용 유당의 양허관세 적용 추천량증량(541톤)에 따라 95년 7월 21일 관련 배정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별 배정하였다. 이번 증량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용으로 95년도는 총 1,000톤이 사용케 되었다

업 체 명	배 정 량	업 체 명	배 정 량
고려케미칼	6	유한인행	11
과학사료	17.5	이화학품	2
과학축산	8	이글케미칼	30
광진제약	1	제일화학	89.25
남전물산	46.5	삼우화학	6
녹십자수의	6	퓨리나코리아	480
대성미생물	11.5	한국고킹	7
동방	28	한국미생물	33
삼양약화학	32.5	바이엘코리아	31.25
서울신약	54	한동	53.5
성원화학	11.5	한성약품	6
우성양행	13	한풍산업	10
유니화학	5	계	1,000

■ 배정량은 연간 총배정량임

3. 수입추천시 유의사항

최근 일부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유가공협회 추천품목인 유당의 추천서류중 일부를 인감과 직인 등을 위조하여 통관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바,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가공협회에서

- 수입을 대행하는 단체 사용인감계 제출
-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구비서류의 사본은 필히 직인 및 1/L(수입신청서) 번호, 일자, B/L(상업송장)번호등이 선명히 보이도록 사본첨부
- 통관보고서 제출기일 엄수(익월 5일까지 제출) 등을 홍보 및 제출토록 요청하여 왔다.

4. 95년도 하반기 원료약품 알찬거래선 지정

1995년도 하반기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알찬거래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다.

품 명	가 격	업 체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Sulfamethazine BP	10.00 \$	조일종합상사	이 상 훈	512 - 2100	512 - 2107
Sulpyrin 98%	6.40 \$	상현화학	류 필 경	549 - 6727	544 - 9370
Albendazole 98%	23.50 \$	우일 인터내셔널	차 원 태	418 - 3833	418 - 3273
Trimethoprim, BP	26.50 \$	우신메딕스	한 재 신	786 - 9849	786 - 9850

5. 수의약사 감시결과에 사례홍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방지노력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각 시·도와 연계하여 사후약사감시의 강화 및 지속적인 실시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점검하고 있는중 최근 전라북도내 유통중인 동물용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기재사항에 대한 약사감시결과 '유효기간 미표시'품목이 다수 발견되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아래의 의약품중 일반제제 유효기간 지정표에 의한 유효기간 표기와 미수목된 기타제제의 품목허가 변경(유효기간 정립) 후 동물용의약품의 표기사항 철저히검점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을 홍보하였다.

동물용의약품중 일반제제 유효기간 지정표

구 분	유효기간
· 비타민	☞ 1년 6개월 (액제는 1년)
· 미네랄제	☞ 2년 (액제는 1년)
· 아미노산제	☞ 2년 (액제는 1년)
· 구충제	☞ 2년
· 소독제	☞ 2년
· 효모 · 효소제	☞ 1년 (생균제제는 추후조치)
· 살충제	☞ 2년
· 기타 일반제제	☞ 2년 (호르몬제 제외)

- 1) 사료첨가용 프리믹스제품은 1년
- 2) 제조업체에서는 자가시험 성적등을 상기 유효기간 이내로 표기
- 3) 제조품목허가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은 허가증의 유효기간 표시

6. 동물용의약품등 수입 품목신고 조건완화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품 및 의료용구 · 위생용품의 수입품목신고 요건완화를 위해 수입시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품목허가를 득한후 우리 협회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토록 조치되어 있는 품목신고 요령이 일반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되어있어 일부항목의 검토자료 부재로 수입 품목신고가 어렵고 이로인한 불합수입 등의 우려가 있어 (동물용의료용구 · 위생용품)의 경우 기구 · 기계 및 용품과 동물용의약품의 품과 같은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품목과 동물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협회의 품목신고후 요건확인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상공부 '통합공고총칙제23조제8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된다 사례되는 품목에 대한 협회의 의견서와 해당품목 수입품목신고서를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시달되어 동물용의약품외 품 및 의료용구 · 위생용품의 수입제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차후 수입품목신고 요령등을 승인받아 자세히 홍보할 예정이다.